

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

제정 1996. 7. 6 조례 제 55호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698호
2009. 4. 24 조례 제1006호
일부개정 2016. 8. 8 조례 제159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6. 8. 8>

제2조(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)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,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당해 읍·면·동의 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3조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6. 8. 8>
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(3년 이하 징역·금고의 경우에는 5년)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
제4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. <개정 2016. 8. 8>

1.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
3.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
4.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
5. 우범청소년 선도·지도 및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·정화활동
6.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활동 등

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6. 8. 8>

제5조(지도위원의 수)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·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24, 2016. 8. 8>

제6조(증표 교부)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[제목개정 2016. 8. 8]

제7조(필요경비 등 지원)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지도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2.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
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6. 8. 8]

제10조(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)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

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, 구, 읍·면·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6. 8. 8]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<2016. 8. 8>]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10조에서 이동 <2016. 8. 8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98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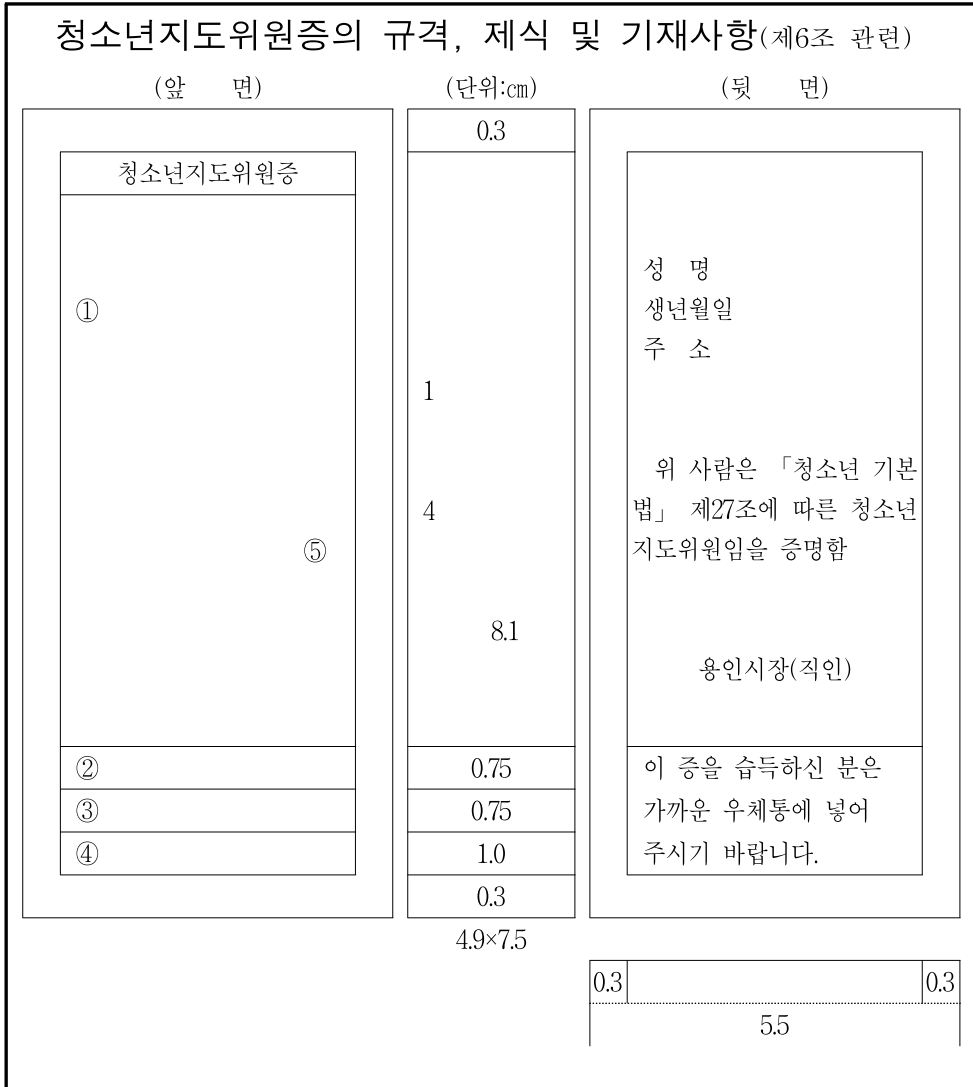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0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8. 8 조례 제159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6. 8. 8>



(비 고)

1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/m²으로 한다.
2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① 사 진	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	
③ 소속기관명	④ 유효기간	⑤ 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